의안번호	2215647
의 뢰 인	김병기의원
회 답 일	2025.12.30.
추계번호	25D7252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56억 8,8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4,334	1,461	5,795
	운영비	5,416	929	6,345
	시설비	767	-	767
	사무실 임차	2,226	555	2,781
	합계	12,743	2,945	15,688

주: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과 2027년으로 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5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함	재량규정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5일 이내에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수사기간 등)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O	-
2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O	-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O	-
4	안 제9조(수사기간 등)	O	-
5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O	-
6	안 제13조(보수 등)	O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함) 임명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사무실 임차료로 나뉘고, 운영규모가 수사기간과 기소 후 공소유지기간 간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추계

❑ 특별검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건희 특검법」이라 함)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

○ 특별검사등의 처우 및 활동기간 등을 「김건희 특검법」(제정 기준)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 제정안과 「김건희 특검법」 비교

구 분	제정안	「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등의 대우 및 보수 수준	특별검사: 고등검사장 수준 특별검사보: 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 3급~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수준	좌동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인원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최대 60명	특별검사보: 최대 4명 특별수사관: 최대 80명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공무원: 최대 60명	파견검사: 최대 40명 파견공무원: 최대 80명
수사기간	170일 이내	좌동
공소유지기간	12개월 이내	좌동

❑ 수사기간에 특별검사보는 3명,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 60명이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소유지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직급 구성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사례를 참고

○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별수사관을 정원의 일부만 임명하고, 기타직을 수사인력 보조 등을 위하여 추가 채용하여 운용[1]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임명될 특별수사관의 직급과 기타직 수 등을 추정하기 곤란

1)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80명이나, 실제 수사기간에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최대 46명이고, 기타직은 최대 23명을 채용하였음(자료: 법무부)

하므로, 수사기간에 기타직 없이 모두 특별수사관(3급)을 정원에 따른 최대인원(60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

○ 공소유지기간의 인력 규모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를 참고하여, 수사 인력의 2분의 1 수준(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28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

❑ 파견인원은 최대인원인 90명으로 가정

○ 제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는 30명 이내, 공무원은 6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간에 최대인원인 검사 30명, 공무원 60명을 파견한다고 가정. 다만, 공소유지기간 파견인력은 21명으로 가정

○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2)]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경비 등에 대한 단가는 김건희 특검의 집행내역[3)]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4)] 및 소비자물가상승률[5)]을 각각 반영하여 산정

○ 특별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200일(2025.6.12.~ 2025.12.28.)이고, 운영비와 시설비 모두 이 기간에 지출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

2)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3) 김건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 2025년

(단위: 백만원)

	수사기간(준비기간 포함 200일) (2025.6.12.~ 2025.12.28.)	공소유지기간 (2025.12.29. ~)
직무활동 운영비[1)]	5,891	
시설비[2)]	595	

주: 1.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평균 185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39명, 기타직 21명, 파견인력 119명)이었음
2.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경비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임
3. 시설비는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네트워크 공사, CCTV 설치공사 등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3.0%	2.4%	2.4%	2.4%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소비자물가상승률(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어 공소유지기간이 최근 개시되어 참고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유지기간 중 운영비 단가는 수사기간의 60% 수준으로 가정

○ 시설비 단가는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 동일하다고 보고, 모두 2026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 수사기간은 170일, 공소유지기간은 12개월로 가정

○ 현 시점에서 실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은 각각 최장 기간(170일, 12개월)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으로 함

○ 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사준비를 시작하여 2026년 6월까지 총 170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은 공소유지기간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는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의 기준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표 3] 3대 특검 직급별 기준 보수액(2025년 기준)

(단위: 원)

직급	월 평균 보수
특별검사	12,122,000
특별검사보	10,925,000
특별수사관(3급)	7,126,000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5년 기준 보수액에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추계

[표 4] 수사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 2026년

구분	2026년			
	1인당 월 보수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특별검사	12.4	1	5.7	71
특별검사보	11.2	3	5.7	191
특별수사관(3급)	7.3	60	5.7	2,496
합계	-	64	-	2,758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5] 공소유지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월 보수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월 보수액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특별검사	12.4	1	6.3	78	12.7	1	5.7	72	151
특별검사보	11.2	3	6.3	211	11.5	3	5.7	196	407
특별수사관(3급)	7.3	28	6.3	1287	7.5	28	5.7	1193	2480
합계	-	32	-	1,576	-	32	-	1,461	3,038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 57억 9,600만원으로 추계

[표 6]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 추정: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수사기간	공소유지기간	공소유지기간	
인건비	2,758	1,576	1,461	5,795

나. 운영비

❑ 특별검사의 운영비는 수사기간의 경우 김건희 특검의 운영비 단가를 적용하고, 공소유지기간의 경우 수사기간 운영비 단가의 60%를 적용하여 추계

❑ 수사기간 운영비는 총 44억 1,0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6.7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인당 단가[6]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7]를 적용

❑ 공소유지기간 운영비는 총 19억 3,5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운영비 1인당 단가의 60%를 적용한 단가(2025년 3백만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8]를 적용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 63억 4,500만원으로 추계

[표 7] 제정안에 따른 운영비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운영비	수사기간	5.0	154	5.7	4,410	5.1	–	–	–	4,410
	공소유지기간	3.0	53	6.3	1,006	3.1		5.7	929	1,935
합계		–	–	–	5,416	–	–	–	929	6,34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시설비

❑ 시설비는 김건희 특검의 시설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시설비는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 모두 2026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6) 수사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58억 9,100만원)를 개월 수(6.7개월)와 활동인원(평균 164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7) 총 154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60명, 파견인력 90명)
8) 총 53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28명, 파견인력 21명)

❑ 수사기간 시설비는 총 5억 7,1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9]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

❑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총 1억 9,6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단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

❑ 시설비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7억 6,700만원으로 추계

[표 8]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 2026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재정소요 (C=A×B, 백만원)
시설비	수사기간	3.7	154	571
	공소유지기간	3.7	53	196
합계		-	-	76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사무실 임차

❑ 사무실 임차료는 수사기간의 경우 김건희 특검의 1인당 면적에 활동인원 수와 서울 도심지역 임대료 단가(2025년 3분기 월 31,000원/㎡)[10]를 각각 반영하여 추계. 관리비는 임대료의 50%(2025년 3분기 월 15,500원/㎡)로 가정함

❑ 수사기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총 16억 1,3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39.5㎡)[11]에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154명)를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6,085㎡) 산출한 후,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

❑ 공소유지기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총 11억 6,900만원으로 추계

9) 수사기간의 시설비(5억 9,528만원)를 활동인원(평균 164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10)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25.10.30. 등록)
11) 수사기간의 사무실 임대면적(6,480㎡)를 활동인원(평균 164명)으로 나누어 산출함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39.5㎡)에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53명)를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2,094㎡) 산출한 후,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

❑ 사무실 임차료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27억 8,200만원으로 추계

[표 9] 제정안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임차면적 (A, ㎡)	단가 (B, 천원)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임차면적 (E, ㎡)	단가 (F, 천원)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사무실 임차	수사기간	6,085	46.5	5.7	1,613	-	-	-	-	1,613
	공소유지기간	2,094	46.5	6.3	613	2,028	46.5	5.7	555	1,168
합계		-	-	-	2,226	-	-	-	555	2,781

주: 단가는 임대료(월 31,000원)와 관리비(월 15,500원)를 합산한 것임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마.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6억 8,800만원으로 추계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4,334	1,461	5,795
	운영비	5,416	929	6,345
	시설비	767	-	767
	사무실 임차	2,226	555	2,781
	합계	12,743	2,945	15,688

주: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과 2027년으로 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 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과 2027년으로 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